

輸入水產物 檢查·檢疫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改善方向

玉 永 秀*

Korean Inspection System of the Imported Fishing Products :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ck, Young - Soo

目 次

- | | |
|-----------------------------------|-----------------------|
| I. 問題의 提起 | 度 검토 |
| II. 水產物의 輸入 및 檢查·檢疫實態 | V. 水產物 檢查 및 檢疫 關聯 問題點 |
| III. 水產物 檢查·檢疫과 관련된 對內外 與
件 變化 | VI. 政策 改善方向 |
| IV. 水產物 輸入檢查·檢疫과 관련된 國內制 | Abstract |

I. 問題의 提起

水產物 輸入自由化的 진전으로 수산물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속적 소득증가는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저칼로리 식품이나 저공해 식품에 대한 소비성향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食品安全性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UR에 의한 농수산물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檢查·檢疫 業務의 중요성을 크게 높였다. 즉 檢查·檢疫 業務는 자국민의 건강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무역규제의 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檢查·檢疫 業務가 무역규제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UR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UR에서는 따로 動植物 檢疫協定(SPS協定)이 체결되었으나 여전히 각국은 이를 활용하고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水產物 輸入檢查 業務는 종래 수출수산물 검사를 전담하고 있던 國立水產物檢查所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써 수입검사에 대한 전문적 체계가 결여된 상태에 있다. 水

* 韓國農村經濟研究員

수산경영론집

產物 檢疫業務 역시 명확한 법적 체계를 결여한 채, 농림수산부령에 의해 國立水產振興院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검역업무에 국한되고 있는 등, 전반적 사업시행의 제도적·기능적 체계가 미비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UR SPS 협약 등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하고, 또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水產物 輸入検査·檢疫業務가 강화되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檢査·檢疫과 관련된 재반 대내외 여건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水產物 檢査·檢疫實態 및 問題點을 파악하여 향후 水產物 檢査·檢疫業務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合理的인 制度를 마련하고, 檢査·檢疫業務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Ⅱ. 水產物의 輸入 및 檢査·檢疫實態

1. 水產物 輸入實態

우리 나라에 있어서 국내소비용 수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수산물 수입개방화와 국내 소비패턴의 변화로 수산물 수입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와서는 수산물 수출금액은 정체상태에 있는 반면 수입금액은 매년 2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1>.

수산물 수입금액이 많은 수입국을 순서별로 보면 러시아,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일본, 태국의 순인데, 이 중 러시아, 미국, 중국에 대한 수입금액은 각각 1억\$ 이상이며, 이들 3개국은 전체 수입금액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보면 중국, 태국,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56.81%, 태국의 경우 52.26%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26.4%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4년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별 수입품목별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여기서 수입품목의 접

<표 1>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천M/T, 백만\$, %

연 도	수 출		수 입		합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1980	-	871	40	-	-	-
1985(A)	432	891	91	83	523	974
1990	455	1,513	286	368	741	1,881
1991	492	1,643	366	576	858	2,219
1992	437	1,518	328	506	765	2,024
1993	371	1,497	356	542	727	2,039
1994(B)	385	1,647	381	726	766	2,373
증감률(B/A)	△10.8	84.8	318.7	774.7	46.5	143.6
연평균증감률	△1.27	7.06	17.25	27.25	4.33	10.40

자료 : 수산청, 수산물 수출입실적, 1995.

輸入水產物 檢査 · 檢疫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改善方向

<표 2> 주요수입국별 품목별 수입금액, 1994

단위 : M/T, %

순위	러시아			미국			중국		
	품목	금액	구성비	품목	금액	구성비	품목	금액	구성비
1	냉동명란	89,522	50.8	명태연육	26,664	19.7	냉동낙지	23,135	20.7
2	냉태연육	17,808	10.1	기타연육	26,406	19.5	피조개	11,745	10.5
3	냉동대구	17,072	9.7	아귀	18,796	13.9	냉동삼치	8,994	8.0
4	게살	11,780	6.7	냉동넙치류	14,500	10.7	냉동복어	6,746	6.0
5	냉동명태	10,409	5.9	냉동명란	10,963	8.1	냉동게	5,956	5.3
6	어분	6,684	3.8	임연수어	7,668	5.7	해파리	5,010	4.5
7	냉동볼락	6,291	3.6	냉동대구	4,025	3.0	어류피레트	4,535	4.1
8	임연수어	5,254	3.0	어분	3,739	2.8	개아지살	3,733	3.3
9	냉동왕게	2,901	1.6	냉동연어	3,407	2.5	냉동새우	2,859	2.6
10	냉동연어	2,009	1.1	신선대구	3,339	2.5	기타어류	2,715	2.4
11	기타	6,545	3.7	기타	15,982	11.8	기타	36,403	32.6
합계		176,275	100.0		135,489	100.0		111,831	100.0
집중도		0.2897			0.1203			0.0727	
순위	아르헨티나			일본			태국		
	품목	금액	구성비	품목	금액	구성비	품목	금액	구성비
1	냉동오징어	38,424	77.2	활도미	9,400	22.2	냉동새우	9,838	35.2
2	냉동연육	6,070	12.2	농어	7,663	18.1	해파리	7,012	25.1
3	냉동어류	3,967	8.0	어류유지	5,328	12.6	냉동연육	4,048	14.5
4	냉동새우	968	1.9	냉동명란	2,546	6.0	새우류	3,496	12.5
5	냉동볼락	208	0.4	냉동문어	2,071	4.9	냉동게	1,494	5.3
6	냉동민대구	86	0.2	냉동정어리	1,948	4.6	어좁	606	2.2
7	냉동어란	60	0.1	어류피레트	1,674	4.0	열대어	303	1.1
8	냉동도미	9	0.0	김	1,193	2.8	보리새우	284	1.0
9	-	-	-	굴치째	1,079	2.5	냉동낙지	236	0.8
10	-	-	-	기타활어	766	1.8	어류피레트	175	0.6
11	-	-	-	기타	8,655	20.4	기타	493	1.8
합계		49,792	100.0		42,323	100.0		27,985	100.0
집중도		0.6177			0.1094			0.2272	

1) 집중도 = $\Sigma(\text{개별품목량}/\text{합계})^2$

자료 : 수산청, 수산물 수출입실적, 1995년에서 작성.

유정도를 나타내는 각국의 집중도 수치를 보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0.6177로 높은 반면, 중국과 일본, 미국의 경우는 각각 0.1 전후로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냉동오징어, 냉동연육 등 두, 세개의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냉동낙지, 피조개, 냉동삼치 등의 품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0% 정도로서 매우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미국으로부터는 명태 등 연육제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그 외 아귀, 냉동넙치류, 냉동명란, 임연수어, 냉동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다. 또 일본도 활도미, 농어, 냉동명란, 냉동문어, 냉동정어리 등이 수입되고 있으며, 김, 굴치째 등도 상당량 수입되어 매우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

수산경영론집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러시아로부터도 비교적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는데, 냉동명란이 전체 품목의 절반 가량을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명태연육, 냉동대구, 게살, 냉동명태, 어분, 냉동불락 등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다. 또 태국으로부터도 냉동새우와 해파리 외에 냉동연육, 보리새우, 냉동게 등이 수입되고 있다.

2. 水產物 輸入檢查實態

수산물 수입검사실태를 보면 건수, 물량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건수 증가율이 훨씬 높아 전당 물량 규모는 매년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3>. 즉 1992년에 대한 1994년의 변화를 보면 2년간 전체 건수는 2.9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물량은 1.2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당 물량은 1994년의 경우 20.25M/T로서 1992년 47.92M/T의 4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전당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수입개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가능 품목수가 늘어나고, 고가품목에 대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입검사실태를 품목별로 볼 때 물량면에서는 염장품, 신선·냉장품, 활어패류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물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냉동 품은 정체상태에 있다. 전당 물량의 변화를 보면 활어패류나 염장품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신선·냉장이나 냉동품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고급품목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1994년 수산물 수입검사가 이루어진 국가는 총 72개국으로서 수입물량면에서는 러시아가, 수입 금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은 치를 보이고 있다<표 4>. 이 표에 의하면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검사실적에 있어 물량보다는 금액의 순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물량면에서 이들 국가의 순위는 각각 3, 10, 12, 11위이지만, 금액면에서는 1, 6, 8, 9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들 나라로부터 비교적 고급 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其他國 중에서 수입검사량이 100톤~2,000톤의 규모인 나라는 32개국에 이르며, 100톤 미만

<표 3> 연도별 품목별 수입검사건수 및 물량변화

구 분	활어·패류	신선·냉장	냉 동 품	염 장 품	기 타	합 계
건수 (건)	1992(A)	1,036	596	2,575	188	83
	1993	986	1,651	3,364	550	365
	1994(B)	1,417	3,995	6,503	658	377
	B/A(%)	136.8	670.3	252.5	350.0	454.2
물량 (M/T)	1992(A)	2,248	1,727	207,096	2,272	1,261
	1993	4,220	1,937	232,673	7,433	1,863
	1994(B)	5,925	5,180	237,900	9,414	3,783
	B/A(%)	263.6	299.9	114.9	414.3	300.0
전당 물량 (M/T)	1992(A)	2.17	2.90	80.43	12.09	15.19
	1993	4.28	1.17	69.17	13.51	5.10
	1994(B)	4.18	1.30	36.58	14.31	10.03
	B/A(%)	192.6	44.8	45.5	118.4	66.0

자료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각연도

輸入水產物 檢査 · 檢疫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改善方向

<표 4> 국가별 수입검사 실적, 1994 단위 : M/T, 천\$, 건

국명	물량(A)		금액(B)		건수(C)		전당중량(A/C)		전당금액(B/C)	
	실적	순위	실적	순위	실적	순위	실적	순위	실적	순위
러시아	59,192	1	113,313	2	612	5	96.72	4	185.15	2
미국	42,098	2	73,525	3	5,594	1	11.71	9	20.46	13
중국	41,664	3	118,731	1	2,753	2	15.13	7	43.13	6
아르헨티나	41,220	4	35,727	4	236	11	174.66	2	151.39	3
뉴질랜드	11,597	5	15,545	7	677	4	17.13	6	22.96	11
일본	7,129	6	32,933	5	865	3	8.24	12	38.07	7
칠레	5,660	7	7,316	12	202	12	28.02	5	36.22	8
노르웨이	5,653	8	11,926	10	524	7	10.79	11	22.76	12
온두라스	5,288	9	5,012	13	14	14	377.71	1	358.00	1
태국	5,196	10	23,135	6	472	9	11.01	10	49.01	5
인도네시아	5,146	11	12,158	9	350	10	14.70	8	34.74	9
베트남	3,780	12	13,411	8	477	8	7.92	13	28.12	10
카나다	3,720	13	8,245	11	533	6	6.98	14	15.47	14
북한	2,655	14	1,583	14	24	13	110.63	3	65.96	4
기타	22,204	-	79,912	-	1,617	-	13.73	-	49.42	-
합계	262,202		552,472		12,950		20.25		42.66	

자료 : 수산물 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인 국가는 26개국이 된다. 특히 이 중에는 10톤 미만인 국가도 12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서 매우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산물이 수입되어 검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水產物 檢疫實態

수산물 검사소에서 실시되는 검역업무는 수산물 검사와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다. 즉 수입검사시 콜레라 등과 같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등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檢疫으로 보기是很困难, 檢査의 일부로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편 수산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移植用 種苗에 대한 검역실태는 <표 5>와 같은데, 1994년의 경우 총 62건으로서, 이 중 굴종묘와 굴유생과 같이 굴과 관련된 품목이 23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1995년 9월 현재는 총 36건으로서 이 중 자라와 관련된 품목의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III. 水產物 檢査 · 檢疫과 관관된 對內外 與件 變化

1. 輸入自由化的 진전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水產物 輸入自由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왔다. 1989년 GATT/BOP 합의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제 1단계 수입자유화 예시가 된 이후, 1994년에는 제 2단계 수입자유화 예시를 통해 수입개방품목을 늘려 왔다. 그 결과 1995년 현재 88.7%의 수입자유화율을 보이고 있으

수산경영론집

<표 5>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실태

어 종	1994		1995 (9. 25 현재)	
	건 수	물 량	건 수	물 량
굴 종 패	9	132,989,780 콜렉타	6	13,739,252 콜렉타
굴 유 생	14	2,138,200 마리	-	-
자 라	15	108,699 마리	6	8,620 마리
자 라 알	4	38,500 개	4	18,500 개
실 뱀 장 어	6	60 Kg	4	200 Kg
보 리 새 우	4	1,337 마리	4	1,355 마리
전 복 치 패	3	300,000 패	1	65,000 패
금 빛 황 어	1	208 미	-	-
송 어 알	3	1,410,000 미	4	420,000 립
연 어 알	2	120,000 립	-	-
진 주 조 개	-	-	5	2,156,000 패
미 꾸 라 지	-	-	2	17,560 Kg
신 천 어 알	1	300,000 립	-	-
합 계	62		36	

자료 : 수산진흥원

<표 6> 수산물 수입자유화 및 예시계획

구 분	1991년까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품목수(개)	242	342	342	354	354	354	354
개방품목수(개)	235	255	275	308	314	331	354
자유화율(%)	68.7	74.5	80.4	87.0	88.7	93.5	100.0

<표 7> 1996년 이후 수산물 수입자유화 대상품목

연 도	1996	1997
품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어(신선냉장) • 기타넙치류(신선냉장) • 가자미(냉동) • 고등어(냉동) • 풍치(냉동) • 갑오징어(냉동) • 우렁쉥이(산 것,신선냉장) • 김(전조이외의 것) • 쥐치(쥐치포) • 명태(냉동) • 넙치(신선냉장) • 꽁치(신선냉장) • 가다랭이(냉동) • 봉장어(냉동) • 갈치(염장염수장) • 꽁치(통조림) • 고등어(통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뱀장어(산 것) • 넙치(산 것) • 명태(신선냉장) • 기타여류(신선냉장) • 조기(냉동) • 멸치(건조) • 새우와 보리새우(냉동새우살) • 새우와 보리새우(전조) • 바지락(냉동) • 갑오징어와 오징어(건조) • 기타연체동물(산 것,신선냉장) • 기타연체동물(냉동) • 다랭이(통조림) • 김(건조) • 가다랭이(통조림)

* 냉동명태('96. 1. 1)를 제외하고 모두 당해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방

며, 1997년에 이르러서는開放化率이 100%에 이르게 될 것이다<표 6>.

한편 1996년 이후 1997년까지 수입개방될 것으로 예시된 품목을 보면 <표 7>과 같은데, 여기에는 갈치, 우렁쉥이, 고등어, 오징어, 명태, 멸치 등 주로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내어민들의 피해가 클

輸入水產物 檢査 · 檢疫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改善方向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초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민피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이들 품목의 개방시기를 뒤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996년 이후 대중어에 대한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수산물 수입량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食品 및 水產物 消費패턴의 變化

지난 20여년간 우리 나라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食品消費行態의 변화이다. 즉 외식산업의 급격한 확산과 육류 및 수산물 소비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곡물 소비의 감소 등과 같이 食品消費行態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핵가족화의 진전과 여성의 취업 확대, 국민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食品消費行態의 變化는 지속화될 것으로 예전된다.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의 소비패턴 변화는 가공품에 대한 소비량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표 8>에는 수산물 유통형태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수산물 가공률이 1970년 대 30% 정도이던 것이 1990년대에는 80% 정도로 높아졌다.

食品消費行態변화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두드러진 변화는 食品安全性에 대한 관심집중이다. 즉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이 과거에는 주로 가격, 영양가 등이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신선도, 식품안전성 여부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표 9>를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이 표는 소비자들이 식품구매시 무공해식품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무공해식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방법은 7점 척도법으로서 7점일 경우 '매우 높다'였는데, 조사치의 전체 평균이

<표 8> 수산물 이용형태 변화추이

단위 : 천M/T, %

구 分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연근해생산량(A)	846	1,569	1,925	2,252	2,350	2,590
선어유통	575	929	954	889	438	629
가공원료(B)	270	641	998	1,363	1,912	1,961
가공률(B/A)	32.0	40.8	51.1	60.5	81.4	75.7

자료 :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각연도에서 작성

<표 9>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무공해식품 관심도

단위 : 점

월 소득 수준별		연령별		지역별	
계 총 구 분	관심도*	계 총 구 분	관심도*	지역구 분	관심도*
1백만원 미만	5.2	10 대	4.8	서울	5.1
1~2백만원	5.2	20 대	4.9	부산	5.1
2~3백만원	5.0	30 대	5.3	대구	5.1
3~4백만원	5.4	40 대	5.4	대전	5.1
4~5백만원	5.2	50 대	5.2	광주	5.5
5백만원 이상	5.5	60 대	5.2		

* 7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7점 만점

자료 : 상공회의소,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행태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조사연구, 1993

수산경영론집

<표 10>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무공해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점수표 단위 : %

월 소득 수준별		연령별		지역별	
계 총 구 分	구매의도여부	계 총 구 分	구매의도여부	지 역 구 分	구매의도여부
1백만원 미만	67.3	10대	61.8	서 울	70.7
1~2백만원	70.5	20대	75.8	부 산	75.0
2~3백만원	72.0	30대	71.5	대 구	72.8
3~4백만원	85.1	40대	76.9	대 전	71.4
4~5백만원	92.0	50대	73.4	광 주	76.7
5백만원 이상	93.3	60대	61.8		

자료 : <표 9>와 같음.

5.1점으로서 관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를所得階層別로 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월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집단의 관심이 5.2~5.5로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후가 5.2~5.4로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식품구매시 비록 가격이 비싸더라도 무공해식품을 실제 구입하겠는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표 10>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무공해식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수준별에 있어 무공해식품을 실제 구입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표 9>의 관심도와 다소 다른 결과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의식과 행동의 차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실제 구입여부는 20~50대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10대와 60대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食品安全性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향후 輸入水產物에 대한 안전도검사 강화의 필요성을 크게 시사하게 된다.

3. 水產物 檢查 · 檢疫과 관련된 對外 與件 變化

1) UR衛生 및 檢疫(SPS)分野 합의

198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GATT 논의에 있어 GATT X X 조 일반적 예외 항중衛生 및 動植物檢疫措置를 각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나름대로의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광범위한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 규정은 GATT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국은 임의로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는 농수산물무역의 자유화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농산물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무역과는 별개의 의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위생/검역 작업단(Working Group on SPS)이며, 이후 1990년까지 12차례의 작업단회의를 거쳐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분야 합의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초안을 토대로 1993년 12월 15일 UR합의와 동시에 SPS분야도 합의를 보아 SPS규정이 발효되었다.

輸入水產物 檢査 · 檢疫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改善方向

SPS 협상은 농산물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각각의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쟁점별로 입장이 제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농산물을 수출 또는 수입만을 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면으로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수입국의 SPS 규제조치를 완화하려는 입장과 다른 일면으로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자국민의 건강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해 위생 및 검역규제를 철저히 하려는 입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SPS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SPS분야의 주요 합의내용은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동등성원칙의 인정, 위험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정 보호수준의 결정, 병해충 미발생 및 제한적 발생지역의 문제, 투명성문제, 방역 검사 및 승인절차, 기술지원, 개도국 특별우대,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행정기구, 시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이의 구체적 내용은 <표 11>에 나타나 있다.

SPS 합의는 위생 및 검역문제가 WTO체제로 편입되고 각국 SPS규제의 국제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외에 많은 합축성을 지니게 된다. 즉 SPS가 WTO의 유일한 합법적 수입제한제도로 정착되었으며, 위험평가제도의 신규도입 내지 운용 확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기존 수입금지지역이 축소되고, 동등성 인정요구가 급증하며, 검역규제에 대한 과학적 입증제시 요구가 빈발할 것 등이 예상된다.

<표 11> SPS 주요 합의내용

구 분	내 용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 :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조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 : 과학적 정당성에 근거하거나 위험평가에 기초해 적절한 보호수준을 결정
동등성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국과 수입국의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SPS조치를 수입국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등성 인정 요청시 협의할 의무가 있음.
위험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정보호 수준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평가는 고려기준 :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 검사 및 시료 채취와 시험방법, 특정 병균 및 해충의 발생수준, 병해충 미발생 지역의 존재, 생태 및 환경 조건, 검역 및 기타 처리사항 적정보호수준 결정시 고려요인 : 경제적 요인 및 SPS에 의한 교역제한효과
병해충 지역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의 SPS조치는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수출국은 병해충 미발생 또는 제한적 발생의 증거를 수입국에 제공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은 SPS조치의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
방역, 검사 및 승인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의 식품, 음료, 사료첨가제의 사용승인 및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설정 등과 이와 관련된 검사/검역방법, 절차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에 대한 검역관련 기술지원
개도국특별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에 대한 장기간의 유예허용(전부 또는 일부유예)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행정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 설치
시행 및 최종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 시행 각종 유예 규정

이와 같은 SPS합의는 우리 나라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제기구와의 조화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상이한 국내 SPS 규제조치는 국제기준에 합치시키거나 또는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만이 향후 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SPS 규제의 국제기준 일치여부 조사 및 과학적 근거 규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동등성 인정문제에 있어서도 향후 우리의 수입금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출국들의 동등성 인정요청이 증가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우리의 수입금지조치는 더 이상 유지가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위험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위험평가제도는 수입국의 자의적인 수입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검역규제수준의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도 많은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의 검사 검역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지식축적과 운용경험 축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危害分析 및 重要管理點(HACCP) 監視制度의 확산

HACCP方式은 危害分析(HA : Hazard Analysis)과 重要管理點 監視(CCP : Critical Control Poin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HACCP의 내용은 식품원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해 그 원재료의 생산에서 시작하여 제조, 가공, 보관, 유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서 소비될 때까지의 각 공정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정 미생물 危害(병원성 미생물, 부패 변파미생물, 미생물독소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이 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공정)중에서 특히 엄중한 관리를 하여야 할 개소(CCP)를 정하고, 거기서의 허용한계기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연속적으로 내지는 적절한 빈도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감시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감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¹⁾.

HACCP은 당초 식품의 미생물위해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발달과정에서 소비자의 건강을 저해하는 모든 면이 고려되어 현재 HACCP을 도입하고 있는 식품제조회사에서는 미생물학적 危害 외에 화학적 危害(농약, 중금속 등), 물리적 危害(유리조각, 금속조각 등)도 그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HACCP방식에는 7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 1원칙으로서 이는 원재료, 제조/가공, 수송/배송, 판매, 조리 및 최종제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特定 危害의 평가와 또한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위험도를 허용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방지대책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식품의 危害특성요인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식품의 危害特性要因은 여섯 가지로 분류되며 식품의 위험도는 이를 토대로 0~Ⅶ까지의 7범주로 구분된다.

현재 미국은 HACCP방식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하여 각 식품제조회사들은 자주적 공정관리방식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 공식적인 제도로 채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HACCP제도가 미국에서 국가 공식적인 제도로 채택될 경우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食品 檢查 檢疫에 있어서는 食品安全性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HACCP제도는 일본 등 여타 선진국으로 크

1) 김명호, "HACCP(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시스템", 「식품KS정보」 제 23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p. 3.

게 확산될 것이다. 이는 미국이 HACCP제도를 공식제도로 채택할 경우 UR SPS협정의 동등성조항에 의해 자국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국의 위생처리수준과 동등한 위생수준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그럴 경우 선진각국은 기왕에 높은 食品安全性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HACCP제도를 도입할 것은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이다.

3) EU의 水產物 衛生検査制度

유럽의 경제공동체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EU 각국은 역내 내수시장의 형성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수산제품은 위생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EC 각국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위생조건을 설정해 둠으로써 역내 자유로운 교역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의회는 회원국간의 기존 위생조건의 차이에 따라 자유로운 교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산물에 대해서는 EC집행위원회에 어획물의 위생적 가공과 시장출하에 관한 종합적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EC집행위원회는 1989년 12월 동물검역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1990년에는 이 지침에 수산물을 적용하는 안을 마련하여 1991년 발효를 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때부터 제3국에서 EC역내로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지침 이전부터 가동 중에 있던 가공공장에도 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내용을 다소 완화하였다.

EU의 수산물 위생검사제도 지침은 본문 3장과 부칙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에는 주로 일반 사항이 언급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세부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부칙의 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공선박에 관한 조건, 양류도중 및 그 이후의 요건, 육상시설의 일반조건, 육상 어획물 처리에 관한 특별조건, 가공중의 위생관리 및 검사, 포장, 식별표지, 창고보관 및 수송 등이 있다.

4) 水生動物 檢疫과 관련된 動向

수생동물의 검역과 관련된 국제기구로는 國際獸疫事務局(OIE :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이 있다. 당초 이 기구의 설립취지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공통적이고 항구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1924년 새로운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각국에 통보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위생상태의 개선과 가축전염병의 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8개국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國際獸疫事務局이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기구는 가축전염병방지가 주된 설립취지라고 할 수 있으나 그후 동물검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생동물 검역업무도 중요업무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水生動物의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종래 '국제동물위생규약'의 규정 중에 그 일부분을 설정하여 놓았다. 그러나 수산업의 발달, 특히 양식업의 발달은 각종 수생동물 질병의 만연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 양식업을 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수생동물의 질병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

수산경영론집

을 수 없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양식업이 성한 많은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국제 수생동물 위생지침에 대한 독립된 규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 결과 1991년 OIE의 전문위원회인 魚類疾病委員會는 '국제 수생동물 위생지침 및 수생동물 진단요령' 초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94년 최종 시안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문에서 지침의 목적을 '수의행정 및 기타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제무역을 위한 수역 위생증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제수생동물 위생규약 및 진단요령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주요 수생동물 질병의 진단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생동물의 위생관리에 대한 통일된 접근을 시도하는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OIE에 통보하여야 할 어류질병의 종류 및 기타 중요한 어류질병을 명시해 놓아 각국은 이를 지침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OIE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할 질병으로는 EHN, IHN, OMV 등 11종류가 있으며, 기타 중대한 질병으로는 CCVD, IPN, ISA 등 14종류가 있다.

5) 기타 水產物 檢查 檢疫과 관련된 制度 및 향후 推移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국의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규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수산물 위생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로는 放射能問題가 있다. 아직 방사능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국제기구에서 이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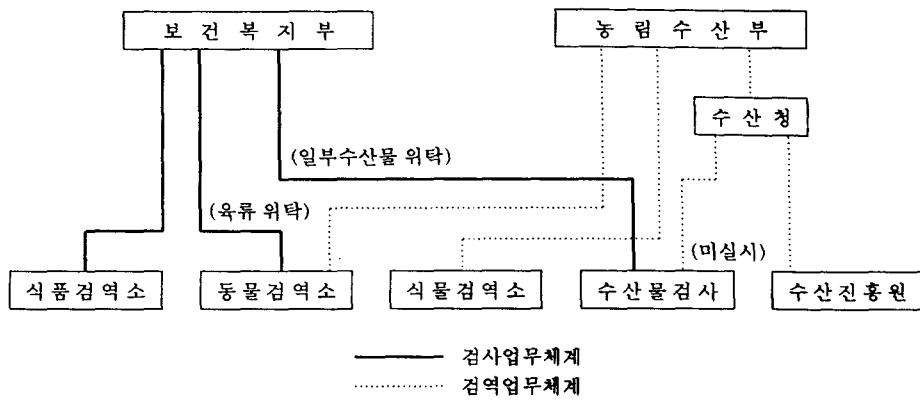
식품에 있어서 방사능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8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CODEX Alimentarius Committee)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식품의 방사능처리방식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식품의 방사능 처리에 관한 일반규격과 이와 관련한 실행규약을 채택하였다. 이후 식품에 대한 방사능처리는 많은 나라에 의해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는 FA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리고 WHO의 세 기구가 합동으로 식품의 방사능처리방식에 따른 경제적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식품에 있어서 방사능처리는 손쉬운 방법과 저렴한 경제성 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성이란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능처리방식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멀지 않는 장래에 이에 대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水產物 輸入檢查 · 檢疫과 관련된 國內制度 검토

1. 우리 나라의 一般的 輸入檢查 · 檢疫 體制

검사와 검역업무가 명확한 정의에 의해 구분되어 시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검사와 검역이 일반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어지기는 하지만, 검사 검역업무가 정밀해짐에 따라 경계구분이 모호한 영역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사 검역업무가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그러한 부분은 더 많아질 것이다.

輸入水產物 檢查 · 檢疫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改善方向



일반적으로 檢査는 인체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檢疫은 동식물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관업무도 인체와 관련된 검사업무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되어 있으나, 육류와 관련해서는 동물검역소에,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국립수산물검사소에 각각 위탁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식물과 관련된 검역업무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부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이들 검사·검역업무는 <그림 1>과 같이 5개의 검사·검역 관련기관에 의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산업활동에 있어서 檢査 檢疫業務의 差異를 보면, 檢査는 수입검사와 수출검사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입과는 별도로 국내 소비용 식품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檢疫은 대부분 수입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檢査 · 檢疫 體制는 크게 positive system과 negative system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positive system은 전세계, 전품목을 일단 규제지역 혹은 규제품목으로 가정한 후 각 지역이나 품목별로 위험 평가의 결과에 따라 금지지역이나 품목을 해제하는 방법으로서 철저한 檢査 · 檢疫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모든 지역과 품목에 대한 위험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정보에 정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negative system은 특정 지역과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지역과 규제품목으로 고시를 하는 방법으로서 국제정보가 다소 부족한 국가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檢査 · 檢疫業務의 운용이 용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檢査 · 檢疫 體制가 대체로 positive system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negative system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negative system이 채택되고 있다.

2. 水產物 輸入検査 體制

수산물 수입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2조 및 제 37조에 의해 수산동·식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업무에 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수산청장에게 위탁된 상태에 있으며, 수산청장은 이

업무를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수산동식물이나 단순가공한 수산동식물이 되는데, 여기서 단순가공품이란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말하게 된다. 이를 품목별로 다시 구분해보면 수산동·식물에는 활어패류가 해당되며, 단순가공품에는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염장품, 어란, 훈제품, 해조류가 해당된다.

輸入水產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수입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수입화물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 검사(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검사소장은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즉시 검사에 임하게 되는데 수입신고된 輸入水產物은 일차적으로 국립수산물검사소에 의해 서류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다시 관능정밀검사와 서류검사에 의해 수입 적부판정이 이루어지는데, 정밀검사 시험방법은 食品公典에 의하게 된다.

관능검사시에는 정밀검사용 검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필요한 추출검사 개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검사결과 최소단위검체의 품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 경우는 전량을 적합으로 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전량을 부적합으로 한다. 검사 결과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는데, 이 때 수입이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는 신고필증이 교부되며,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는 반송되거나 폐기 등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輸入水產物의 검사종류는 書類検査, 官能検査, 精密検査의 세 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능검사와 정밀검사에는 서류검사도 포함된다. 따라서 서류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은 대부분의 輸入水產物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관능검사라 함은 현품이나 검체를 보고 성상, 색깔, 맛, 냄새, 등에 의하여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는데, 검사대상은 서류검사의 대상수산물 중 일정한 수산물을 제외한 것이 된다. 이 때 제외되는 수산물은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제 11조 관련)에 의거하여 결정되는데, 동법에서 제외되는 식품의 종류에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 등 자연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껌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말리거나, 숙성·염장한 식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도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배제되며, 익힌 것 중에도 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세균학적 수단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에 적합여부 또는 특정한 물질의 함유·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하는 검사를 말한다. 정밀검사의 대상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데,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이 대상이 된다. 정밀검사에서는 수입신고자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이 배제된다.

한편 관능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상, 색깔, 맛, 냄새, 선별, 그레이징, 활력도 등이 있으며, 정밀검사 항목에는 수분, 선도(V.B.N), 생균수, 중금속(수은, 납 등), 방사능, 항균성물질, 기생충, 패류독소 등이 있다.

3. 水產物 檢疫 體制

1993년에는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 및 검사업무가 일반검역소에서 수산물검사소로 위탁됨에 따라 일부 수산물에 대한 검역업무도 수산물검사소로 이관되어 왔으며, 그 결과 활어에 대한 검역업무는 수산물 검사소가, 이식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수산진흥원에 대한 업무 외에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대로 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수산물 검역업무는 현재 이원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즉 활어수입에 대한 검역업무는 수산물검사소가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양식용 종묘 등의 이식과 관련해서는 수산진흥원 병리과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활어에 대한 수산물검사소의 검역업무는 검사의 연장선에서 기생충검사나, 인체와 관련된 전염병 병원체검사등 일부 검역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검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수산물검사소의 능력상 기생충, 어병 등 검역과 관련한 제반 역학조사기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수산진흥원 병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양식용 종묘 등의 이식과 관련한 검역업무는 농림수산부령 제 1138호에 의한 ‘水產動植物 移植承認에 관한 規則’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동 규칙 제 4조 6항에 의하면 ‘수산청장은 국내 이식승인을 할 때에는 이식품종 반입시에 국립수산진흥원장, 수산연구소장 또는 내수면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전문직 공무원을 입회시켜 병충해 감염여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염된 품종에 대하여는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산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식수산동식물에 대한 검역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반입 5일전까지 관할 수산연구소에 병충해 감염검사를 의뢰하고 통관시에는 무병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 검사의뢰를 받은 관할 연구소장은 검사능력이 없거나 업무 사정상 검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반입지에서 가장 가까운 연구소(수산진흥원 본원 포함)에 검사를 이첩 처리도록 한다.

이식동식물에 대한 검역시 검사항목은 수산진흥원 내부지침에 의해 검사가 가능한 세균성 및 기생성 질병에 한하지만, 바이러스 질병검사는 민원인이 수산동식물의 이식을 신청할 때, 이식대상 수산동식물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출국가에서 들어 온 것이라면 국립수산진흥원장은 병충해 감염여부에 관한 반출국가의 관련자료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전제출케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산진흥원 병리과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V. 水產物 檢查 및 檢疫 關聯 問題點

1. 무분별한 輸入 增加

水產物 輸入自由化가 진전되면서 무분별하게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징후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서 수산물 수입검사시 나타나는 不適合率을 통해 잘 알

수산경영론집

<표 12> 연도별 수산물수입 부적합실태 및 부적합률

단위 : 건, 톤, 천\$

연도	검사 실태(A)			부적합실태(B)			부적합률(B/A)(%)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1992	4,478	214,604	249,751	141	1,082	3,562	3.15	0.50	1.43
1993	6,916	248,126	290,290	287	2,140	6,386	4.15	0.86	2.57
1994	12,950	262,202	443,635	401	4,225	12,752	3.10	1.61	2.31

자료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연보, 각연도.

수 있다. 즉 최근 수산물 수입에 있어 不適合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무분별한 수산물수입을 의미하게 된다.

수입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반송조치되거나 폐기 또는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률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마구 수입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수산물 수입부적합률의 변화를 보면 <표 12>와 같은데, 1994년의 부적합 물량은 4,225M/T이며, 금액으로는 12,752천\$에 이르고 있다. 부적합률은 건수면에서 3.10%, 물량면에서 1.61%, 금액면에서 2.31%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건수면에서 3.4%를, 물량면에서는 0.5~1.61%를 보이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도 1.43~5.7%를 나타내고 있다. 연별 변화로는 물량과 금액면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적합률은 반송 또는 폐기된다는 점에서 축산물이나 식물 검역시 사용되는 廢棄率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축산물 검역시 폐기율이 물량기준으로 0.08%이고(1993), 식물 검역시 폐기율도 물량기준으로 0.08%(199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수와 물량 및 금액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수보다 물량에서의 부적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입물량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때 부적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의 경우 건수보다는 낮으나 물량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단가면에서는 전체평균보다 높은 경우에 부적합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가품일 경우 부적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수산물 수입 부적합사례를 검사방법별로 보면 <표 13>과 같은데, 대부분 정밀검사에 의해 부적합 판정이 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전체 부적합 건수의 86.3%, 물량의 80.8%, 금액의 86.7%가 정밀검사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능검사에 의한 부적합사례는 건수면에서 13.7%, 물량면에서 19.2%, 금액면에서 13.3%에 불과하였다. 이는 정밀검사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서는 정밀검사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밀검사를 다시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VBN 초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균수 초과, 중금속 초과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VBN과 생균수 초과는 정밀검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부적합 사례의 80% 가까이 점할 정도로 대표적인 부적합 사례가 되고 있다.

수산물 수입검사의 부적합사례를 품종별로 보면 <표 14>와 같다. 여기서는 부적합사례 총량으로서는 냉동품이 가장 많으나, 전체 검사량에 대한 부적합량의 비율인 부적합률의 측면에서는 활어 패류와 전제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냉동품도 부적합률로서 보면 건수면에서는 높은 비율을

輸入水產物 檢查 · 檢疫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改善方向

<표 13> 수산물 수입검사방법별 부적합실태, 1994.

단위 : 건, 톤, 천\$

구 분	항 목	건 수	물 량	금 액	주 요 품 목
정밀검사	VBN초과	163(40.6)	1,777(42.1)	5,747(45.1)	냉동게, 낙지, 새우, 가오리
	생균수초과	145(36.2)	1,268(30.0)	4,546(35.6)	냉동게, 새우, 낙지, 피조개
	중금속초과	24(6.0)	277(6.6)	367(2.9)	활미꾸라지, 냉동논고동
	수분초과	12(3.0)	53(1.3)	273(2.1)	마른해삼, 마른굴, 마른까나리
	염분미달	2(0.5)	40(0.9)	128(1.0)	염장열빙어, 염장조기
	소 계	346(86.3)	3,415(80.8)	11,061(86.7)	
관능검사	품질불량	28(7.0)	312(7.4)	1,007(7.9)	염장해파리, 냉동쭈꾸미, 냉동게
	폐사	21(5.2)	488(11.6)	644(5.1)	활미꾸라지, 활낙지, 활농어
	제한품목	6(1.5)	10(0.2)	40(0.3)	냉동새우살, 냉장전갱이
합 계	소 계	55(13.7)	810(19.2)	1,691(13.3)	
합 계		401(100.0)	4,225(100.0)	12,752(100.0)	

자료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수산물 검사업무편람, 1995.

<표 14> 품종별 수산물수입 부적합실태 및 부적합률

단위 : 건, 톤, 천\$

연 도	검 사 실 태 (A)			부 적 합 실 태 (B)			부 적 합 률 (B/A) (%)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활어패류	1,417	5,925	25,173	38	668	836	2.68	11.27	3.32
신선냉장	3,995	5,180	28,642	15	4	24	0.38	0.08	0.08
냉동 품	6,503	237,900	465,148	320	3,274	10,929	4.92	1.38	2.35
전체 품	296	1,357	7,922	14	45	298	4.73	3.32	3.76
염장 품	658	9,414	23,100	13	215	656	1.98	2.28	2.84
해조류등	81	2,426	2,487	1	19	9	1.23	0.78	0.36
합 계 (평균)	12,950	262,202	552,472	401	4,225	12,752	3.10	1.61	2.31

자료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보이고 있으나, 물량과 금액면에서는 전체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활어패류의 경우 건수면에서는 2.68%에 불과하나, 물량면에서는 11.27%나 된다. 이는 소규모로 수입되는 활어패류의 부적합률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향후 활어패류에 대한 檢查 · 檢疫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

輸入水產物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부적합실태를 분석해 볼 때 일반내수용이 합작어획물이나 원자재용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내수용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부적합률을 보면 건수면에서 3.59%, 물량면에서 2.50%, 금액면에서 3.55%에 이르고 있는 반면, 합작어획물의 부적합률은 건수 1.72%, 물량 0.28%, 금액 0.82%에 불과하다<표 15>. 일반내수용이란 의미는 국내외의 가격차이에 의해 순수하게 국내소비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일반내수용의 부적합률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수산물 수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한편, 부적합실태를 수입대상국가별로 보면 중국, 칠레,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부

수산경영론집

<표 15> 수입내역별 수산물수입 부적합실태 및 부적합률

단위 : 건, 톤, 천\$

연 도	검 사 실 태 (A)			부 적 합 실 태 (B)			부 적 합 률 (B/A) (%)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일반내수용	10,805	162,076	344,979	388	4,051	12,263	3.59	2.50	3.55
합작어획물	699	61,899	59,281	12	171	486	1.72	0.28	0.82
원 자 재	1,359	36,903	144,027	-	-	-	-	-	-
기 타	87	1,324	4,185	1	3	3	1.15	0.23	0.07
합계(평균)	12,950	262,202	552,472	401	4,225	12,752	3.10	1.61	2.31

자료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표 16> 주요 수산물 수입대상국별 부적합실태 및 부적합률, 1994

단위 : 건, 톤, 천\$

연 도	검 사 실 태 (A)			부 적 합 실 태 (B)			부 적 합 률 (B/A) (%)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러 시 아	612	59,192	113,313	3	10	6	0.49	1.69	0.01
미 국	3,594	42,098	73,525	22	46	338	0.61	0.11	0.46
중 국	2,753	41,664	118,731	38	3,037	8,266	1.38	7.29	6.96
아르헨티나	236	41,220	35,727	-	-	-	-	-	-
뉴질랜드	677	11,597	15,545	1	-	-	0.15	-	-
일 본	865	7,129	32,933	8	131	670	0.92	1.84	2.03
칠 레	202	5,660	7,316	4	76	197	1.98	1.34	2.69
노르웨이	524	5,653	11,926	-	-	-	-	-	-
온두라스	14	5,288	5,012	-	-	-	-	-	-
태 국	472	5,196	23,135	11	128	394	2.33	2.46	1.70
인도네시아	350	5,146	12,158	10	44	239	2.86	0.86	1.97
베트남	477	3,780	13,411	61	417	1,159	12.79	11.03	8.64
캐나다	533	3,720	8,245	6	22	111	1.13	0.59	1.35
북 한	24	2,655	1,583	-	-	-	-	-	-
기 타	1,617	22,204	79,912	57	314	1,372	3.53	1.41	1.72
합 계	12,950	262,202	552,472	401	4,225	12,752	3.10	1.61	2.31

자료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 검사연보, 1995.

적합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표 16>. 즉 중국에 있어서의 부적합률을 보면 건수면에서는 1.38%이나 물량면에서는 7.29%, 금액면에서는 6.96%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의 부적합률을 보면 건수면에서 12.79%, 물량면에서 11.03%, 금액면에서 8.6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그들 국가의 위생관념이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개발 봄을 타고 급속히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이 가속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산물수입은 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996년과 1997년의 2개년에 완전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소비선호도가 높은 고급어종에 대한 수입이 늘어난

輸入水產物 檢査 · 檢疫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改善方向

다고 볼 때,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증대는 국민건강상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輸入検査 · 檢疫 體制上の 問題

우리 나라의 檢査 · 檢疫體系는 negative system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negative system이란 원칙적으로 전세계, 전품목에 대한 규제는 두지 않되, 필요에 따라 수입금지품목과 지역만을 고시하는 방법으로서 檢査 · 檢疫 대상건수와 물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장점이 부각되어 효과적이나 대상건수와 물량이 커지게 될 때에는 단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²⁾.

우리 나라 수산물무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수출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negative system에 의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으나, 최근 세계각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수산물이 수입됨에 따라 점차 단점이 부각되는 경향에 있다<표 17>. 즉 수입규모가 커지고,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장비와 인력으로 모든 수입물량을 일일이 檢査 · 檢疫해야하는 negative system은 과중한 업무부하를 초래하여 부실검사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또 SPS 협정에 따라 장차 위험평가제도의 도입도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 negative system은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데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도 檢査 · 檢疫 體制에 대한 문제제기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制度上の 未備

현재 수산물 수입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고유업무는 수출수산물과 일부 국내소비용 수산물, 그리고 정부가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검사이다. 이는 수산물 검사의 근거법령인 수산물 검사법에 의한 업무분장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전통적인 업무분장내용으로서 국내소비용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업무는 1992년 이후에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검사소의 본래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수출상품에 대

<표 17> 檢査 · 檢역에 있어서 negative system의 장단점

내 용	장 점	단 점
원칙적으로 전 세계, 전품목에 대한 규제는 두지 않되, 필요에 따라 수입금지품목과 지역만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입규모가 소량일 때 유리(업무가 용이)수입금지품목을 정할 때는 모든 병충해에 대한 위험평가를 한 후에 하는 것이나, 이 제도에 의할 때에는 과학적·기술적 축적 없이도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쉽게 수입금지품목을 선정할 수 있음.금지 병해충을 법적근거에 기초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 외국으로부터의 이의 제기에 대응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입규모가 다양화되고, 다량일 경우 업무파다 초래SPS 협정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한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데 용이치 못함위험평가제도와 같은 위험평가과정이 불필요하여 국가의 필요성 및 국익의 상용도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을 해제해 나갈 수 있는 탄력성이 없음

2) 조홍수·김동민, “WTO체제 하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의 현황과 발전 방향”, 「농업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5, pp. 124~125.

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의 행정규제완화로 점차 검사대상품목수가 줄어들어, 현재 실질적인 검사대상품목수는 13개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 나마도 이들 품목에 대한 자율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반해 1991년부터 위탁업무로 시작된 수산물 수입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기본 근거법령은 보건복지부의 *食品衛生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검사와 수입검사의 일관된 시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수출수산물과 수입수산물에 대해 단순히 검사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근거법에 의한 업무가 주된 업무로 바뀌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산물 검사소가 검사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수산물검사소와 수산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검역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업무가 쉽게 부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산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역업무는 농림수산부령에 의한 ‘*水產動植物 移植承認에 관한規則*’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령인 수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중 수산진흥원 직제에 조차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즉 수산진흥원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검역과 관련된 업무분장이 없으며, 실제 담당부서인 병리과의 업무분장도 수산생물에 관한 병리학적 시험 · 연구, 수산생물에 관한 약리학적 시험 · 연구, 병원생물에 관한 분류학적 연구, 병원생물에 관한 생리 · 생태학적 연구의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또 수산물검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역업무는 그나마의 규정도 없어 실질적인 검역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検査 · 檢疫*의 구분이 모호한 인체질병 관련 검사 등 일부 검역 성격의 업무만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최근 수산물 수입증가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活魚貝類*의 수입이 대량화되고, 관상어 등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미비된 수산물 검역문제는 개방화시대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 등 인접국으로부터 수입된 활어패류는 바로 소비자로 출하되지 않고, *蓄養* 등에 의해 출하조절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검역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이들 수산물은 성어가 반입되기 때문에 어병 보균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물론 이들 수산물을 불법으로 축양하는 것은 수산업법의 위반사항이기는 하나, 법적 불법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어병의 발병을 막기 위한 제반 조치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병의 발병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한 번에 대량폐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어류검역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수산물을 통한 인체질병의 확산속도가 점차 빨라질 뿐 아니라, 어병의 발병 지역이 광범위해지고, 대규모화해진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일대에서 크게 창궐하였던 이리드 바이러스의 확산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水產物檢查所 機能 未備 및 施設 · 裝備 不足

수산물검사소의 기능 및 조직체계가 輸出検査爲主로 되어 있어 輸入水產物에 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수산물검사소의 연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 수출검사가 주된 업무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능도 수출검사 위주로 운용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전변화에서 본 바와 같이 점차 수산물검사에 대한 수산물검사소의 기능은 변모되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의 수산물검사는 국민 건강을 위주로 한 안전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기능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輸入水產物 檢査業務와 관련한 기획평가, 연구개발, 각종 국내외 정보분석 등 종합적인 관리기능이 발휘되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수산물 검사소의 조직체계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즉 서무과, 검사과, 분석과의 세 과로만 이루어져 있어 업무가 매우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검역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정밀검사분야, 국제정보관련분야의 부서가 결여되므로, 분석이나 국제동향파악에 대한 업무의 독자성 및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한편 과거 수산물 검사소의 업무는 수산물 수출검사가 주된 업무이었기에 검사소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分析爲主의 精密検査보다 官能検査가 중심이 되었으며, 그 결과 출장검사가 많았다. 그러나 輸入水產物에 대한 검사가 늘어나고 精密検査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분석업무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각종 시설 및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분석실의 경우 장소가 넓거나 협소하여 원활한 분석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또 정밀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정밀검사장비는 현저하게 부족하여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있다. 이 결과 몇 시간이면 분석가능한 업무도 기존의 장비로는 검사처리기간이 10~15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검사가 이루어 질 소지가 있다. 분석장비 보유실태를 보면 전체 소요량에 대한 보유량의 비율은 55.5% 수준으로서 지금보다 배 정도의 분석장비가 더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8>. 그러나 이것은 단순분석기기인 기타 항목의 보유율이 65.3%로 비교적 많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서 정밀분야별로 보면 4.3%~43.9%의 극히 낮은 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병, 기생충 분야의 경우 총 소요량 47점 중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점에 불과하여 4.3%의 장비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검역관계업무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중금속 분야는 15.6%, 균성물 분야는 23.5%, 방사능 분야는 33.3%의 낮은 보유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정밀검사분야의 장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5. 專門性 缺如

무역자유화가 진전되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수입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국은 국민 건강보호를 명분으로 한 檢査 · 檢疫業務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檢査 · 檢疫을 무역장벽

수산경영론집

<표 18> 수산물 검사소의 정밀검사장비 소요량 및 보유량 실태

분 야	소요량(점)	보유량(점)	보유율(%)	미보유 또는 과부족한 주요장비명
중 금 속	64	10	15.6	• 원자흡광광도계, 수은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이온크로마토그라피*, 마이크로웨이브분해기 등
균 성 물	34	8	23.5	• 액체크로마토그라피, 항생물질분석기, 질량분석기* 등
방 사 능	9	3	33.3	• 감마선분광기 등
어병·기생충	47	2	4.3	• 전자현미경*, 입체현미경, 조직처리기*, 마이크로톰*, 초저온냉동고* 등
세 균	123	54	43.9	• 위상차현미경, 인큐베이터, 저온인큐베이터, 워터바스, 고압증기멸균기, 코로나가운터, 크린벤치 등
유기독성물질	11	4	36.4	•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기 타	809	528	65.3	• 분광광도계, 드래프트챔버, 디지털적외선수분기전자화학천칭, 분액여두진탕기 등
합 계	1,097	609	55.5	

* 미보유장비

자료 : 수산물 검사소

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檢查·檢疫業務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과 향후 檢查·檢疫業務는 매우 전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水產物 輸入検査·檢疫業務를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일부 전문분석 검사요원이 매우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수산물 검사소의 경우 단순한 관능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 외에 전문분석요원 중 일반세균, 중금속 전문분석요원은 현재의 업무하에서는 비교적 충분하게 확보되었으나, 放射能, 抗菌性物質, 貝毒 및 魚病分野 등의 전문분석요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특히 여기서 어병분야의 전문분석요원이 전무한 것은 수산물의 검역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패독분야의 경우도 복어 등의 수입증가에 따른 독성어의 검사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 건강차원에서 매우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HACCP, EU의 수산물 위생관련제도, OIE에 의한 수생동물의 검역문제 등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전문화된 檢查·檢疫 인력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6. 國際動向分析 未洽

향후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라 수산물 檢查·檢疫 體制는 다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WTO의 SPS규정, EU의 수산물 위생관련규정, 미국 등의 HACCP제도, OIE의 수생동물 검역 관련규정 등 많은 국제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업무관장 조직이 미비하고 수산

물 위생과 관련된 대내외 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수출수산물 공장등록제 정보를 민간기업을 통하여 입수한다거나, 해외 신제품 및 신기술 정보 입수가 잘 안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각국의 수산물 검사기준이나 원산지 정보 등에 관한 자료부족뿐만 아니라, 국내검사제도 및 관련규정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를 판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VII. 政策改善方向

WTO체제하에서 수산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활발한 무역자유화의 물결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매우 급속한 수산물 수입증대를 가져 왔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소득 증가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수입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저질 수산물이 반입되거나, 각종 병충해에 감염된 수산물이 반입되어 국민건강을 해치거나 국내 양식어업에 대한 외래 병충해의 전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UR 이후 국제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輸入検査 · 檢疫問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輸入検査 · 檢疫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수산물 수입량의 증가와 수입물의 종류 및 국가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입검사 및 검역제도를 negative system에서 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positive system은 이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SPS 협정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한 위험평가제도를 채택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둘째, 危險評價制度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 대한 수출수산물의 위생검사는 매우 강화되고 있다. 즉 미 · 일의 HACCP제도, EU의 생산과 위생검사 관련제도 등의 시행으로 위생검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이들 제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SPS의 위험평가제도를 조기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수출수산물과 마찬가지로 輸入水產物에 대해서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위험평가제도의 도입은 위험평가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 및 국익의 상응도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을 하나 하나 해제해 나갈 수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선진국에 의해 식품에 대한 각종 평가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산물 검역기능이 수산물검사소와 국립수산진흥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水產物検査所로 一元化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활어패류의 수입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검사와 검역의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산물 검사소가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산진흥원의 경우 하부기관이 없어 민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검역업무가 강화될 경우 각종 행정력의 발휘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이루는데는 수산물검사소가 적합할 것이다.

수산경영론집

넷째, 檢查·檢疫과 관련된 各種 制度整備를 들 수 있다. 이중 검역과 관련해서는 이식용 수산물과 활수산물에 대한 검역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水產物檢查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산물 검사법에 이식용 수산물과 활수산물에 대한 검역근거를 삽입하여 수산물 검역의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법의 내용에 검역관의 권한부여, 위법자에 대한 제재조치, 병충해 감염품종에 대한 처분 조치규정을 삽입하여 검역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한다. 이와 아울러 기존의 수산물 수입검사가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산물수입검사의 근거법을 水產物檢查法에 수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독자적인 檢查審議委員會의 설치, 운용이 가능하여 수산물 수입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人力擴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점차 수산물의 수입이 증대되고, 새로운 업무가 확대되는 등 수산물 檢查·檢疫 관련업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수산물 검사소 검사원의 업무량은 과중한 상태에 있으므로 수산물검사소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확충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인력확충과 더불어 특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향후 정밀검사업무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분야중 방사능, 항균성, 기생충, 패독, 어병, 유기독성물질, 식품첨가물분야에 대한 전문검사인력이 전무하거나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검역업무가 수산물검사소에서 실시된다면 검역전문인력에 대한 인력보강 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國際動向分析 및 檢查·檢疫 情報體系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농수산물의 무역에 있어 국제간의 檢查·檢疫業務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國제동향 분석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검역·검사 정보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관세청 등 수입 관련 부처와의 전자문서화 체계를 구축하고, 輸入水產物 檢索 시스템 개발, 국내외 병충해 및 危害物質 管理시스템 개발, 국제 검사·검역 규격의 전산화 S/W 개발 등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일곱째, 裝備補強 및 現代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수산물 검사소에 있어서 水產物 檢查·檢疫 分野 중 현대화된 장비보유율이 특히 낮은 어병 및 기생충, 중금속, 균성물에 대한 정밀장비가 우선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 연후에 방사능, 세균, 유기독성물질 등에 대한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水產物 檢查所의 機構改編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밀분석 담당부서와 검역업무 전담부서의 설치가 그 내용이 된다. 이중 전자는 정밀분석에는 전문적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석내용에 따라서는 비교적 긴 분석기간(1~10일)을 요하는 것도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분석을 전담하는 精密分析課를 신설하여 중금속, 방사능 등 정밀분석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동과의 부수업무로는 국제동향 분석 업무를 병행시키도록 한다.

한편 國際獸疫事務局(OIE)에서는 수산생물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및 동 제품에 대해서 권한있는 당국이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국제위생(검역)증명서 발급과 각국의 질병조사

輸入水產物 檢查 · 檢疫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改善方向

보고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식용수산물 뿐만 아니라 활어패류에 대한 검역업무가 수산물 검사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수산물검사소내에 檢疫關聯 全擔部署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곳에서 수산물검역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각지소에는 검역요원을 별도로 두도록 한다. 이 때 검역인력 교육 및 새로운 어병에 대한 검역법 개발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립수산진흥원 병리과를 활용하도록 한다.

參考文獻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입수산물 검사업무 편람」, 1993.
김명호, “HACCP(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시스템”, 「식품KS정보」 제23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3. 4.
농림수산부, 「SPS협정해설」, 1995.
_____, 「WTO/SPS 협정 및 국제수역사무국(OIE) 관련규정」, 1995.
상공회의소,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조사연구」, 1993.
이재우 등,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85, 1993.
정진웅, “식품의 위해미생물 관리와 HACCP”, 「식품KS정보」 제26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4. 3.
조홍수 · 김동민, “WTO체제하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농업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5.
日本植物防疫協會, 「植物防疫の軌跡」, 1991.

Korean Inspection System of the Imported Fishing Products :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ck, Young – Soo

Abstract

The import quantity of the fishing products is very rapidly increasing in the Korea. In the result, the inspection problems are caused to important issues in the fishing products import managements. The major problems of the Korean fishing products inspection are in the system side and structure side. The important improvement schemes are the changement to positive system in the system side, and the unitary in the structure side.